



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_①대만

* 작성자 : 박지현



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

1.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

● 유아용 식품에 대한 위생 및 잔류농약 표준 초안 WTO에 통보(2014. 4. 22)¹⁾

● 대만은 식품안전 및 위생법 제15조, 제17조에 따라 유아용 식품(Infant Foods)에 대한 잔류농약 한계치를 규정하는 표준을 2014년 4월 22일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음.

- 이러한 규정은 12개월 미만의 유아용 식품에 해당되며, 모유를 대체하는 분말 및 액체 유형의 식품에 적용됨.
- 유아용 식품은 고유의 맛과 색상을 가져야 하며, 부패나 오염, 변색되어서는 안 되며, 곰팡이 또는 기생충이 발견되어서도 안됨.
- 유아용 식품에 대한 잔류 농약(Pesticide) 한계치는 0.01ppm을 초과해서는 안됨.
- 유아용 식품에 대한 납(Lead)의 한계치는 0.02ppm, 주석(Tin)은 50ppm(캔류)임.

■ 유아용 식품에 대한 마이코톡신 한계치 ■

마이코톡신(Mycotoxins)	식품	한계(ppb)
Aflatoxin B1	가공된 곡물 관련 식품	0.1
Aflatoxin M1	유아용 우유	0.025
Ochratoxin A	가공된 곡물 관련 식품	0.50
Zearalenone	가공된 곡물 관련 식품	20
Deoxynivalenol	가공된 곡물 관련 식품	200
Fumonisin B1+B2	가공된 옥수수 관련 식품	200

출처: http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14/sps/CHT/14_2004_00_e.pdf

1) G/SPS/N/TPKM/312



● 한국산 김치의 잔류농약허용치 초과 반송 및 폐기(2014. 3. 5)²⁾

- 대만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는 2014년 3월 5일 수입변경검역(수입검역)검사에
서 한국산 김치의 농약잔류량 허용치가 초과되어 검역 불합격됨을 발표하였음.
- 대만의 ‘잔류농약안전허용량표준’ 규정에서 테부코나졸(Tebuconazole)의 잔류농
약 허용치는 0.01ppm이나, 한국산 김치에서 테부코나졸이 0.04ppm 검출되었음.
- 이에 따라 수입된 김치는 전량 폐기 조치되었음. 이는 한국 수출시의 규정이 테
부코나졸의 허용치가 0.05ppm로 대만과 한국간의 허용치가 상이함으로 인해 나
타난 결과임.
- 이와 같은 사례는 두 번째로 지난 2014년 1월 한국산 김치의 농약잔류량 허용치
가 같은 이유로 초과되어 전량 반송 및 폐기 조치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대만 수출시 샘플링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은 대만 수
입관련 규정 및 농약잔류허용치를 숙지하여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
가 있음.

● 즉석면류(라면) 제외하는 육류함유가공식품 수입검역요건 수정 초안WTO에 통보 (2014. 2. 20)³⁾

- 대만 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은 육류함유가공식품⁴⁾을 수입할 경우 대만의 검
역허가를 받아야 하며, 즉석면류 등 세 가지 품목은 검역요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
의 수정 초안을 2014년 2월 20일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음.
- 이전 내용에서는 즉석면류(1902.30.10.10-7, 라면, 육류함유), 즉석죽류
(1904.10.20.11-6, 육류함유), 고체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탕류 및 그 조제품
(2104.10.21.00-4, 육류함유) 등 세 품목이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품목들
에 포함되어 있었으나,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들 품목이 제외되었음.
- 육류함유가공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할 경우, 대만의 검역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

2)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(KATI)

3) G/SPS/N/TPKM/305

4) 우제품 동물 또는 가공류 동물 육류 및 뼈·내장 성분의 가공제품을 지칭함.

은 중화민국 제품기준 분류코드(CCC, Code)에 따라 아래 8개 품목임.

- 기타 소를 넣은 쌀국수, 조리·조제를 막론한 육류함유(1902.20.10.10-9)
- 기타 소를 넣은 국수, 조리·조제를 막론한 육류함유(1902.20.90.10-2)
- 기타 튀기거나 구운 쌀 함유량 30% 이하의 곡류조제식품, 육류함유(1904.10.20.91-9)
- 기타 튀기거나 구운 곡류조제식품, 육류함유(1904.10.90.10-2)
- 기타 예비 조리용 또는 기타 방식 조제의 입자형태, 조각형태 또는 기타 가공(분말 및 세립 제외)의 곡류(옥수수 제외)제품, 쌀 함유량 30%이하, 육류함유(1904.90.10.10-2)
- 기타 예비 조리용 또는 기타 방식 조제의 입자형태, 조각형태 또는 기타 가공(분말 및 세립 제외)의 곡류(옥수수 제외)제품, 육류함유 (1904.90.90.10-5)
- 건빵류, 베이커리빵, 유사한 베이커리제품, 육류함유(1905.40.00.10-4)
- 액체형태 탕류 및 그 조제품, 육류(2104.10.11.00-6)

● 위 품목들의 수입검역요건은 다음과 같음.

- 제조공장은 수출국 담당 기관의 승인을 거쳐 생산에 종사하거나 육류함유가공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어야 함.
- 제조공장은 원료 육류의 유형별, 원산지, 수량, 일자 및 제품가공 제조일자 등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고 동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해야 함.
- 제품은 새로운 용기에 포장해야 함.
- 원료용 육류, 뼈·내장은 도축위생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함.
-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이 서명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하고, 영문, 중문 또는 중·영문 혼합방식으로 아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.
 - 제조공장 이름 및 주소
 - 제품 품명, 수량, 중량 및 제조일자
 - 동물성 성분 원료에 함유된 동물 종별
 - 검역증명서 발급일자, 장소, 기관 명칭과 서명 발급한 수의사 성명과 날인

2.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

◆ ‘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규정’ 신규 제정 발표(2014. 3. 7)⁵⁾

- 대만 정부는 ‘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규정’을 새로 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2014년 3월 7일 발표함.
 - 주요 내용은 시판되는 용기 또는 포장 제품이 새우, 게, 망고, 땅콩, 우유, 알류 등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, 알레르기 유발성 내용물 포함에 대한 경고 표기를 해야 함.
 - 경고 표기 문구는 ‘본 상품은 XX가 포함됨’, ‘본 상품은 XX가 포함되어 있으며, 알레르기 체질자 식용시 부적합함’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.
- ‘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규정’에서의 알레르기 유발성 내용물 및 그 제품은 다음과 같음.
 - 새우 및 그 제품 : 각 종 새우류 및 새우류에서 추출된 키토산(chitosan), 글루코산(glucosamine) 등 성분, 새우전병, 새우소스, 새우완자 등 그 제품
 - 게 및 그 제품 : 각 종 게류 및 게류에서 추출한 키토산, 글루코산 등 성분, 게맛살, 게 완자 등 그 제품
 - 망고 및 그 제품 : 망고건조식품, 망고잼, 망고 아이스크림, 망고젤리, 망고케익 등
 - 땅콩 및 그 제품 : 땅콩기름, 땅콩캔디, 땅콩분말, 땅콩잼, 땅콩소스, 땅콩전병, 땅콩즙 소스류 등
 - 우유 및 그 제품 : 우유에서 추출한 유당, 카세인, 유청단백질(whey protein), 락토페린(lactoferrin)등의 성분을 포함한 제품, 치즈, 버터, 크림, 마가린, 분유, 요거트, 요플레, 유산음료, 우유과자, 우유캔디 등 그 제품, 단 우유추출 성분 중 락티톨(lactitol) 포함 제품은 제외
 - 알류 및 그 제품 : 계란, 오리알, 거위알, 타조알 등 각종 알류 및 알류에서 추출된 알부민(albumin) 성분, salted egg(짭계란), 피판, 달걀말이, 계란과자, 계란 노른자 소스, 계란 샐러드, 계란분말 등 그 제품

5)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(KATI)

- 알레르기 유발성 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포장표기 규정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한국 농식품의 대만 수출 시 성분 및 경고 표기 등에 대한 관련 규정 숙지 등 주의가 요구됨.

● 유전자변형 대두 및 옥수수 원료 사용 식품표시 사항 공포(2013. 9. 26)⁶⁾

- 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원료로 총량의 5%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은 ‘유전자개조’ 또는 ‘유전자개조 포함’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2013년 9월 26일 공포함.
-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대두 또는 옥수수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‘유전자 미개조’ 또는 ‘유전자 개조되지 않음’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.
- 유전자 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해서 제조한 간장, 식용유(샐러드유), 옥수수유, 올리고당, 옥수수전분 등은 ‘유전자 개조’ 또는 ‘유전자 미개조’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됨.
- 유전자 관련 표시 문구는 품명 혹은 대두, 옥수수 원료 성분 혹은 기타 명확한 위치에 추가 표시할 경우, 글자체 길이 및 너비는 2mm 보다 작아서는 안됨.

● 식품위생관리법 수입식품 관리강화 신규 제정(2013. 6. 19)⁷⁾

- 대만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해 보다 강화된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을 2013년 6월 19일 공포함.
- 식품위생관리법에 식품수입관리에 대한 전문 장을 신규 제정하였으며,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임.
- 수입신고 내용이 실제와 불일치할 경우, NT\$3만 ~300만 달러 벌금구형이 가능하고 수입검사가 잠정 중단됨. 비판매목적의 수입검사 면제 상품이 판매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1년간 수입검사 면제가 정지됨.
- 변경수입검사 등의 방식으로 수입 시 보증신청 후에는 먼저 반입이 가능함. 단, 필요 시 심사 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, 특정 지점에 보관해야 하며, 임의로 이

6)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(KATI)

7)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(KATI)



동하거나 판매 또는 지정 보관 지점과 실제 보관지점이 다른 경우 1년간 보증신청이 불가하고 최고 12배까지의 벌금 구형이 가능함.

- 안전성 위험도가 높은 식품은 수입 전 계통성 검사가 실시되며, 안전위생문제 발생 시 대만 국경외 지역으로 파견인원을 보내 조사함.
- 중대한 식품 위생안전사건 발생 또는 수입검사 불합격수준이 과도할 경우에는 특정업체, 생산지, 상품에 대해 수입검사 신청을 정지함.

●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에 대한 일부 조항 수정(2013. 4. 8)⁸⁾

- 수입신고의무인이 검사기관에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정보를 사전 신고 했을 때, 검사기관이 발부한 문건에 대해 동의한 경우 수입검사를 면제함.
- 동의문건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, 수입검사신고 상품과 사전 신청상품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기관은 동의문건을 폐지하고, 1년내 수입신고 의무자의 수입신고 접수를 받지 않음.

8)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(KATI)